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u>2 등급으로 분류</u> 하였습니다. <u>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u>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C5622)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y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 년 9 월 1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년 10 월 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1 좌 = 1 원)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9.16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562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가가격변동에 따른 **주식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종목의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498%	0.950%	1.600%	1.5060%	154	314	479	827	1,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23%	0.475%	1.050%	1.0320%	106	216	330	572	1,267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4.21~ 2026.04.20	2024.04.21~ 2026.04.20	2023.04.21~ 2026.04.20	2021.04.21~ 2026.04.20	2018.03.29~ 2026.04.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155.41	60.15	43.23	20.10	12.62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55
수익률변동성	27.68	23.76	21.02	19.06	19.13

(주1) 비교지수 = [KOSPI200*90%]+[CD금리*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 (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 (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1)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R, 종류 C-R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매손실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큼 추가된 1,100 원(1,00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종류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5622)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5623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5624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C5629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5626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562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1)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1 좌 = 1 원)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개시일: 2018 년 3 월 29 일

(2)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7 호에 규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5622)

종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562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562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C5629 연금저축계좌가입자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5626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5627 퇴직연금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전용 투자자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8.03	최초신고
2018.10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2020.0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0.12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9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 -> KB 국민은행)
2023.08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3.12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5.0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클래스 관련 설명 개정)
2025.0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0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1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년 수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기구 수(개)	(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은형	1981	(책임) 수석매니저	5	7,618	99.32	73.13	81.83	63.71	18년2개월
심창현	2000	(책임) 매니저	1	579	-	-	81.83	63.71	3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은형		- 연세대학교 경영학 - 한국투자증권(2004~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심창현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25~현재)							

[운용전문인력인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김은형, 심창현: 해당사항없음]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근3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0.12.24~2022.01.20	최찬규	이세호
2022.01.21~2023.08.10	이세호	최찬규
2023.08.11~2023.12.29	김은형	방원석, 박상민, 박범지
2023.12.30~2025.03.06	박범지	김은형, 방원석, 박상민
2025.03.07~2026.02.05	박범지	박상민
2026.02.06~2026.10.01	박범지, 박상민	-
2026.10.02~현재	김은형, 심창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투자목적	국내 주식 중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비교지수	([KOSPI200] x 0.9) + ([CD 금리] x 0.1)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식부문 -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권에 주로 투자하는 가치투자 운용방식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추구 채권부문 -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 집합투자계약 제3조 제5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동성자산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계정대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내용
주식	70% 이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채권	30% 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율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집합투자증권등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가 가능
증권의 대여 ^{주 3)}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까지 투자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주 4)}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은행계정대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

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2) 상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간에 한정한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주 1)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주 3)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 금리] x 0.1)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가치투자전략으로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되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 주식운용전략: 가치투자

전략	내용
개별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주권은 해당 주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발행한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 투자신탁은 경제상황이나 산업동향 그리고 해당 주권의 수요와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발행한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투자방식(Bottom-Up)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선정 기준	(1) 저 PER :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가치 대비 낮은 주가가 형성된 주식에 투자 (2) 저 PBR :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낮은 주가가 형성된 주식에 투자 (3) 성장가치 :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 (4) 진입장벽 :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정도 (5) 고배당 : 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선호
장기투자	주권의 빈번한 매매는 거래비용 과다, 투자 수익의 안정성 저해를 가져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통해 투자수익의 안정적인 증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채무증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주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 금리] x 0.1)

(4) 위험관리

수준별 위험관리	해당 위험	관리방안
----------	-------	------

기업탐방 및 자료조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익감소, 자산가치 하락 위험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운용역 수시점검	경영진의 주주이익 침해 위험	주주들에 대한 불리한 정책결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고시키도록 합니다.
최고운용책임자	장기수익률 저조 위험	투자하고 있는 자산구성이 이 투자 신탁이 추구하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준법감시인	법규, 규정 위반 위험	정기/수시 교육, '사전주의리스트' 작성 및 적용
컴플라이언스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기/수시 모니터링 실시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명칭: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식 등 자본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는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가입 시기(주식시장 침체기, 호황기)나 자금 납입 방식(적립식, 거치식) 등에 따라서도 이익 또는 손실이 변동됩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 등급 중 **2 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가 산정한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산정을 위해 산출한 최근 결산일(2026 년 3 월 26 일) 기준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45.51%
-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97.5% 신뢰수준의 Value at Risk(VaR) 모형을 사용하며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을 곱하여 산출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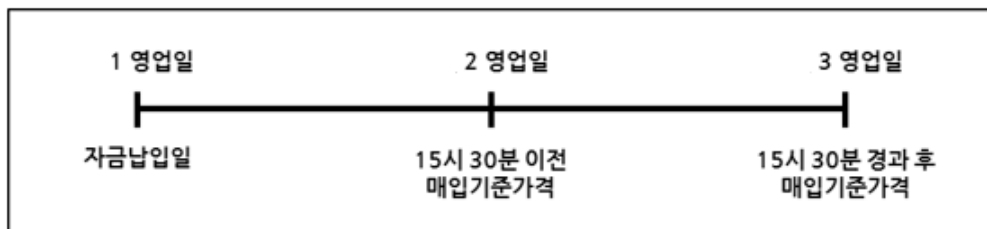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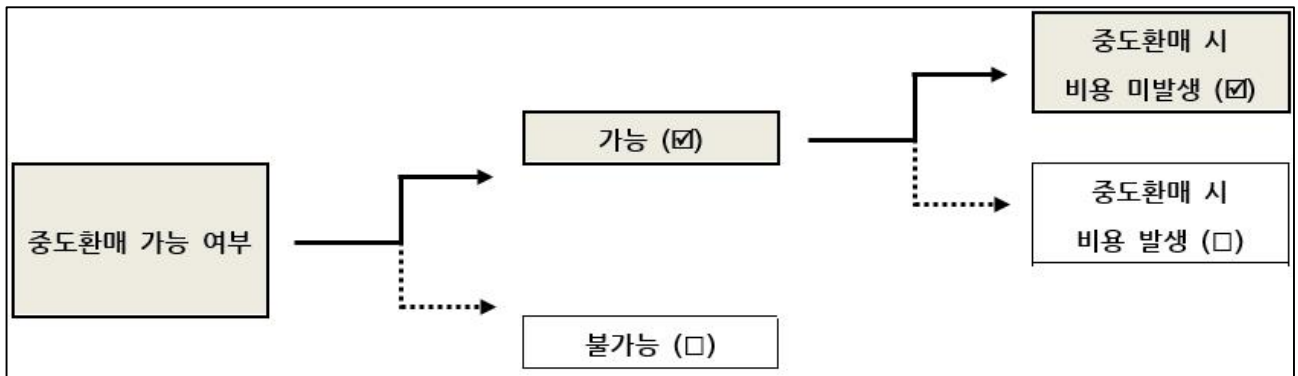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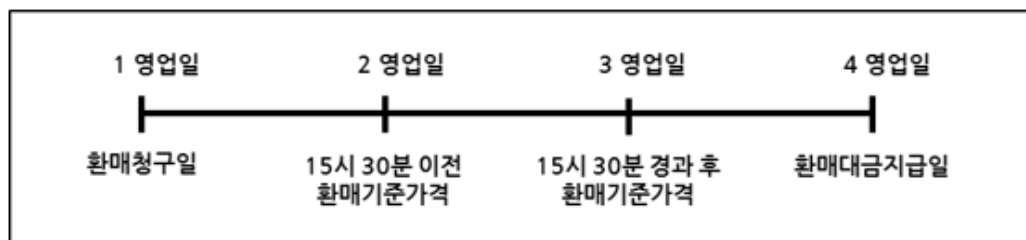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에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일부환매 청구시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계약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i)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ii)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i)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ii)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iii)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iv)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환매연기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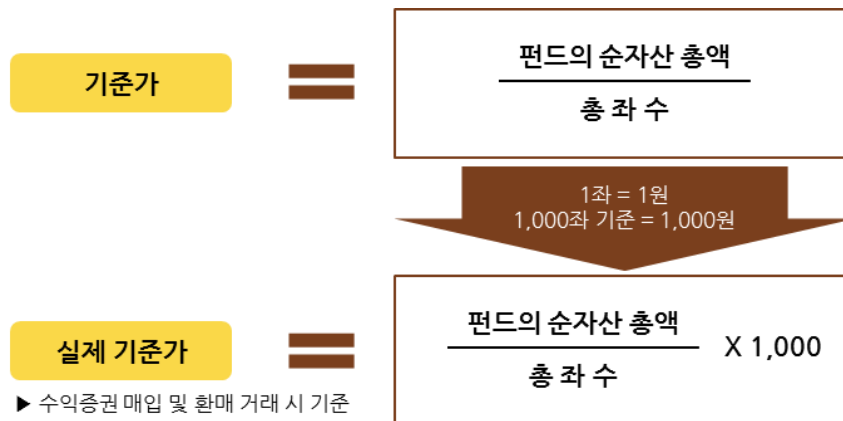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집합투자계약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	-------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합니다. 단,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계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 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의 평가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파생결합증권	-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에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CIO,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u>운용 부서장, 운용지시 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u>
업 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0.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C)	0.5000	0.9500	0.0300	0.0180	1.4980	1.600	0.0016	1.4996	1.5060	0.9635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C-E)	0.5000	0.4750	0.0300	0.0180	1.0230	1.050	0.0014	1.0244	1.0320	1.0243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연 금(C-R)	0.5000	0.8000	0.0300	0.0180	1.3480	-	0.0016	1.3496	1.3561	0.9714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퇴직연 금(C- Re)	0.5000	0.4000	0.0300	0.0180	0.9480	-	0.0014	0.9494	0.9581	1.0893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슈퍼 개인연 금(S-P)	0.5000	0.2800	0.0300	0.0180	0.8280	-	0.0000	0.8280	0.8360	1.0436
지급 시기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총보수·비용 비율(피투자집합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7) 직전 회계기간 중 실제 발생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79
증권거래비용	56,891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발행분담금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0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00	
총 보수	0.0000	-
기타비용	0.0069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069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0069	-
증권 거래비용	1.0269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회계연도 : 2025.03.27 ~ 2026.03.26]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3	477	824	1,8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	154	314	479	827	1,807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5	214	328	568	1,2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	106	216	330	572	1,267
종류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282	430	744	1,6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	139	283	432	747	1,639
종류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199	304	527	1,1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	98	200	307	532	1,180
종류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173	265	461	1,0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	86	175	268	465	1,036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8 년 03 월 29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

	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2.28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가입자의 3 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세 5.5%(종합과세 가능)

* '13.01.01 이후 가입한 계좌의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세 5.5% 과세)

* '12.12.31 이전 가입한 고객은 사망 외 부득이한 사유 없음

※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 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 900 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하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600 만원을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최대 900 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한도	연 600 만원 공제율: 13.2%	연 900 만원 공제율: 13.2%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 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 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 기 (2025.03.27 ~ 2026.03.26)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제7기 (2024.03.27 ~ 2025.03.26)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제6기 (2023.03.27 ~ 2024.03.26)	회계감사면제 ^{주)}	해당없음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4 조에 의거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8 기	제 7기	제 6기
	2026.03.26	2025.03.26	2024.03.26
운용자산	10,283,734,011	3,160,390,555	3,365,651,959
증권	9,973,586,039	2,924,940,975	3,113,678,72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10,147,972	235,449,580	251,973,23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37,074	447,764	12,387,120
자산총계	10,284,171,085	3,160,838,319	3,378,039,07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3,143,759	8,625,254	20,790,040
부채총계	23,143,759	8,625,254	20,790,040
원본	4,356,707,669	3,074,526,144	3,180,153,463
수익조정금	977,470,845	7,022,723	23,487,400
이익잉여금	4,926,848,812	70,664,198	153,608,176
자본총계	10,261,027,326	3,152,213,065	3,357,249,039

(단위: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기	제 6기
	(2025.03.27 ~ 2026.03.26)	(2024.03.27 ~ 2025.03.26)	(2023.03.27 ~ 2024.03.26)
운용수익	4,965,667,683	74,199,440	655,676,223
이자수익	5,633,726	7,235,729	6,820,62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960,033,957	66,963,711	648,855,60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4,369,670	38,475,081	37,792,712
관련회사 보수	64,369,670	38,475,081	37,792,71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82,444	647,049	633,531
당기순이익	4,900,215,569	35,077,310	617,249,980
매매회전율	543.72	431.58	353.58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주 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8기 0원, 7기 0원, 6기 0원 발생)

주 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8기 0원, 7기 0원, 6기 0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주식	56,070	57	0.10	23,973	24	0.10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255	0	0.10	294	0	0.10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	-	-	-	-	-	-
합계	56,325	57	0.10	24,267	25	0.10

주1)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주2)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백만원, 주, %)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532,106	28,127	486,173	27,992	5,148	543.72	32.09

주1) [직전 회계연도 :2025.03.27 ~ 2026.03.26]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이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8기 (2026.03.26)		제7기 (2025.03.26)		제6기 (2024.03.2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 용 자 산		0		0		0
현금및예치금		310,147,972		235,449,580	251,973,235	251,973,235
1. 현금및현금성자산	310,147,972		235,449,580		251,973,235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9,973,586,039		2,924,940,975		3,113,678,724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9,973,586,039		2,924,940,975		3,113,678,724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437,074		447,764		12,387,12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65,741		11,853,763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437,074		382,023		533,357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0,284,171,085		3,160,838,319		3,378,039,079
부 채		0		0		0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3,143,759		8,625,254		20,790,04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64,452		11,621,337	
4. 수수료미지급금	23,143,759		8,560,802		9,168,703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3,143,759		8,625,254		20,790,040
자 본		0		0		0
1. 원본	4,356,707,669		3,074,526,144		3,180,153,463	
2. 이월잉여금	5,904,319,657		77,686,921		177,095,576	
(발행좌수 당 기 : 4,356,707,669 좌 전기 : 3,074,526,144 좌 전전기 : 3,180,153,463 좌)	이익잉여금	4,926,848,812		70,664,198		153,608,176
	수익조정금	977,470,845		7,022,723		23,487,400
(기준가격 당 기 : 2,442.17 원 전기 : 1,068.64 원 전전기 : 1,052.63 원)						
자 본 총 계		10,261,027,326		3,152,213,065		3,357,249,03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284,171,085		3,160,838,319		3,378,039,079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8기 (2025.03.27 ~ 2026.03.26)		제7기 (2024.03.27 ~ 2025.03.26)		제6기 (2023.03.27 ~ 2024.03.2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4,965,667,683		74,199,440		655,676,223
1. 투자수익		5,633,726		7,235,729		6,820,621
1. 이 자 수 익	5,633,726		7,235,729		6,820,621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961,053,403		91,910,618		654,150,826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4,961,053,403		91,910,618		654,150,826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19,446		24,946,907		5,295,224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1,019,446		24,946,907		5,295,224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65,452,114		39,122,130		38,426,243
1. 운용수수료	27,880,521		15,997,964		15,645,368	
2. 판매수수료	34,816,914		21,517,831		21,209,208	
3. 수탁수수료	1,672,235		959,286		938,136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 타 비 용	1,082,444		647,049		633,531	
당기순(손실)이익		4,900,215,569		35,077,310		617,249,980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1,125		11		19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종류 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8	8	1	1	2	3	7	16
2024.03.27 ~ 2025.03.26	8	8	1	1	1	1	8	8
2023.03.27 ~ 2024.03.26	8	7	1	1	1	1	8	8

주 1) 20250327 ~ 2026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7,592,424] 좌 / [39,452,767] 원

주 2) 20240327 ~ 2025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9,049,854] 좌 / [9,049,854] 원

주 3) 20230327 ~ 2024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6,437,602] 좌 / [36,437,602] 원

[종류 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6	6	8	15	5	8	9	22
2024.03.27 ~ 2025.03.26	5	5	1	1	1	1	6	6

2023.03.27 ~ 2024.03.26	4	4	2	2	1	1	5	6
----------------------------	---	---	---	---	---	---	---	---

주 1) 20250327 ~ 2026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0,535,025] 좌 / [47,630,781] 원

주 2) 20240327 ~ 2025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5,203,856] 좌 / [5,342,065] 원

주 3) 20230327 ~ 2024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8,953,212] 좌 / [29,506,213] 원

[종류 C-R]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10	10	1	1	2	3	9	20
2024.03.27 ~ 2025.03.26	10	10	4	4	4	3	10	10
2023.03.27 ~ 2024.03.26	11	9	2	2	3	3	10	10

주 1) 20250327 ~ 2026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5,872,636] 좌 / [58,312,003] 원

주 2) 20240327 ~ 2025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9,148,250] 좌 / [9,221,799] 원

주 3) 20230327 ~ 2024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7,801,863] 좌 / [37,949,667] 원

[종류 C-R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7	7	16	29	5	11	17	41
2024.03.27 ~ 2025.03.26	8	8	2	1	3	3	7	7
2023.03.27 ~ 2024.03.26	5	4	7	7	4	4	8	9

주 1) 20250327 ~ 2026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46,737,350] 좌 / [108,516,647] 원

주 2) 20240327 ~ 2025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6,119,263] 좌 / [6,315,444] 원

주 3) 20230327 ~ 2024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5,311,054] 좌 / [36,151,453] 원

[종류 S-P]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1	1	1	1	0	0	1	3
2024.03.27 ~ 2025.03.26	1	1	0	0	0	0	1	1
2023.03.27 ~ 2024.03.26	0	0	1	1	0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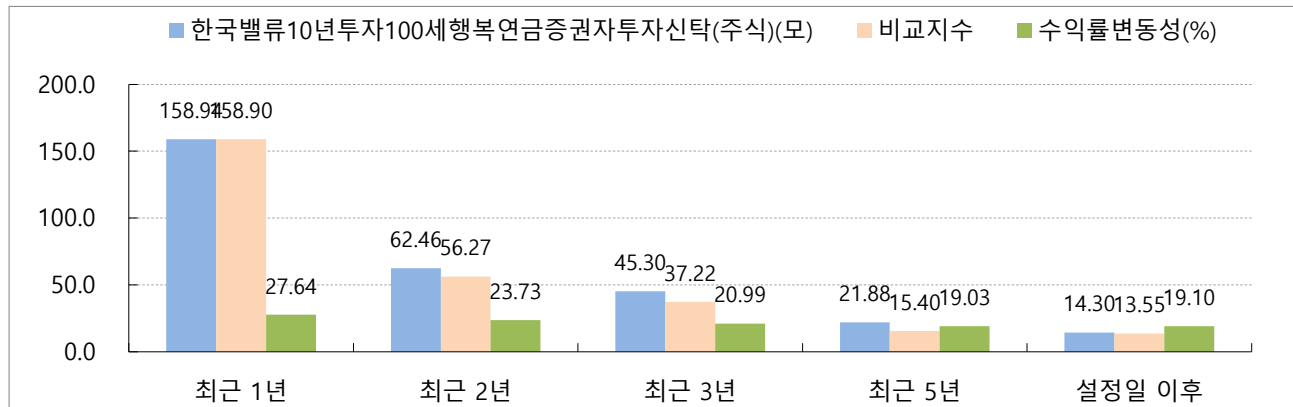
주 1) 20250327 ~ 2026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401,886] 좌 / [7,925,203] 원
 주 2) 20240327 ~ 2025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601,482] 좌 / [624,969] 원
 주 3) 20230327 ~ 2024032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112,737] 좌 / [2,175,083]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2026.04.20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4.21~	2024.04.21~	2023.04.21~	2021.04.21~	
			2026.04.20	2026.04.20	2026.04.20	2026.04.20	
운용		2018.03.29	158.94	62.46	45.30	21.88	14.30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55
수익률변동성(%)			27.64	23.73	20.99	19.03	19.10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2018.03.29	155.41	60.15	43.23	20.10	12.62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55
	수익률변동성(%)		27.68	23.76	21.02	19.06	19.13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2018.03.29	156.52	60.87	43.88	20.66	13.15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55
	수익률변동성(%)		27.67	23.75	21.01	19.05	19.12
종류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2018.06.08	155.76	60.37	43.44	20.28	12.94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66
	수익률변동성(%)		27.68	23.76	21.02	19.06	19.33
종류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2018.05.04	156.69	60.99	43.99	20.75	13.24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37
	수익률변동성(%)		27.66	23.75	21.01	19.05	19.22
종류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2018.04.03	156.98	61.18	44.16	20.90	13.06

	비교지수		158.90	56.27	37.22	15.40	13.48
	수익률변동성(%)		27.66	23.74	21.01	19.04	19.14

주1) 비교지수: $([KOSPI200] \times 0.9) + ([CD금리] \times 0.1)$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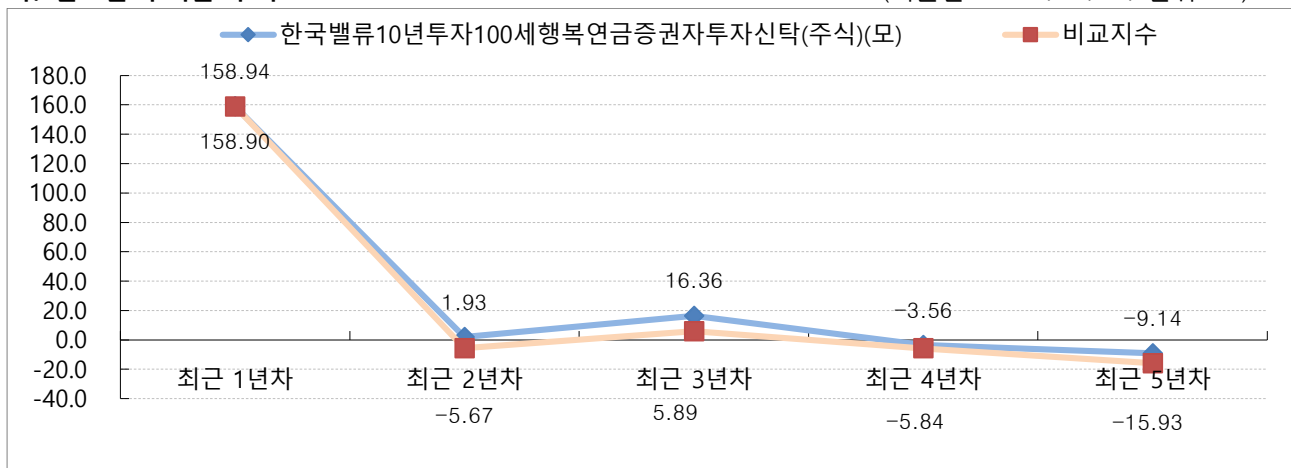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26.04.20.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4.21~ 2026.04.20	2024.04.21~ 2025.04.20	2023.04.21~ 2024.04.20	2022.04.21~ 2023.04.20	2021.04.21~ 2022.04.20
운용		158.94	1.93	16.36	-3.56	-9.14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155.41	0.41	14.69	-5.05	-10.48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156.52	0.89	15.21	-4.58	-10.06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종류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155.76	0.56	14.85	-4.90	-10.35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종류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156.69	0.97	15.29	-4.50	-9.99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종류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156.98	1.09	15.43	-4.38	-9.88
	비교지수	158.90	-5.67	5.89	-5.84	-1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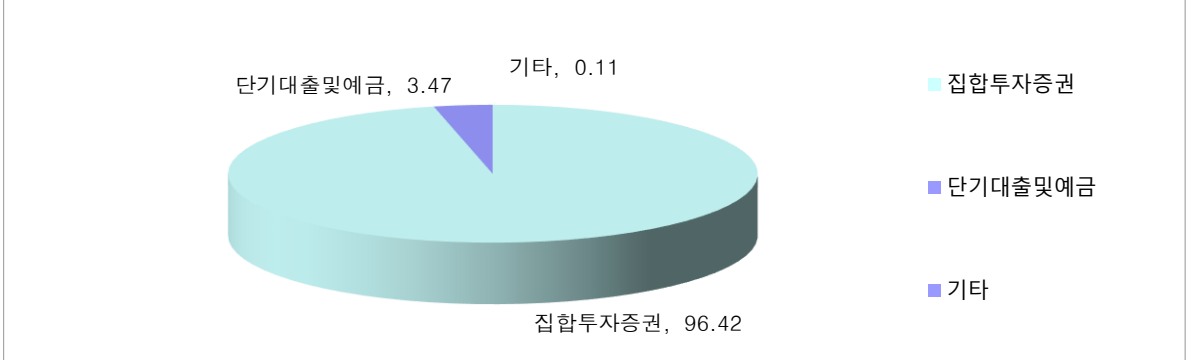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KOSPI 200] \times 0.9) + ([CD금리] \times 0.1)$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7)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8)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 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6.03.31 /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90	0	0	0	0	0	3	0	93
	(0.00)	(0.00)	(0.00)	(96.42)	(0.00)	(0.00)	(0.00)	(0.00)	(0.00)	(3.47)	(0.11)	(100.00)
합계	0	0	0	90	0	0	0	0	0	3	0	93
	(0.00)	(0.00)	(0.00)	(96.42)	(0.00)	(0.00)	(0.00)	(0.00)	(0.00)	(3.47)	(0.11)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라. 국내주식 업종별 자산구성현황

(2026.03.31 현재 / 단위 :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28.8	32.23
2	일반서비스	14.2	15.88
3	기계·장비	10.4	11.63
4	제약	9.9	11.09
5	제약	9.1	10.22
6	IT 서비스	8.9	9.99
7	금속	2.7	3.00
8	기타금융	2.3	2.58
9	오락·문화	1.7	1.85
10	기계·장비	0.9	1.00
11	기타	0.5	0.55
합 계		89.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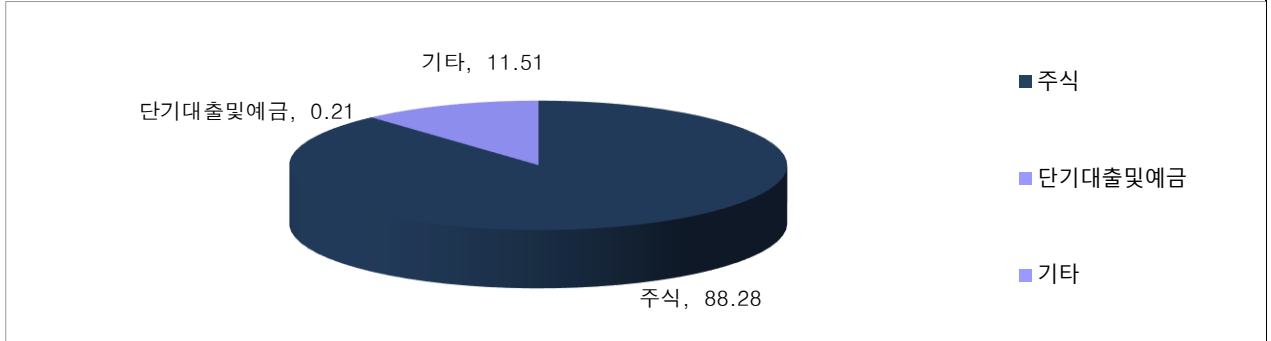
(주 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84 (88.2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21)	50 (11.51)	4 (100.00)
합계	384 (88.2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21)	50 (11.51)	4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국내주식 업종별 자산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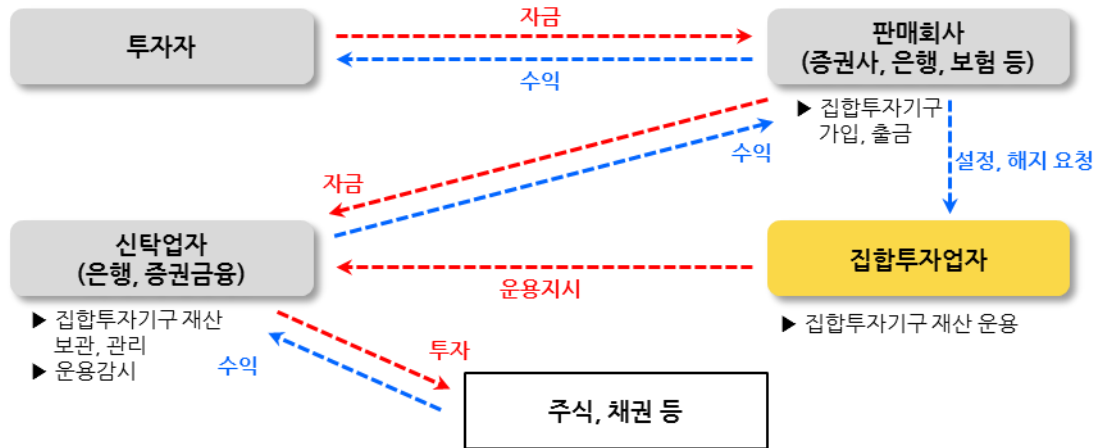
기준일: 2026.03.31 / 단위 :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123.6	32.23
2	일반서비스	60.9	15.88
3	기계·장비	44.6	11.63
4	제약	42.5	11.09
5	제약	39.2	10.22
6	IT 서비스	38.3	9.99
7	금속	11.5	3.00
8	기타금융	9.9	2.58
9	오락·문화	7.1	1.85
10	기계·장비	3.8	1.00
11	기타	2.1	0.55
	합 계	383.5	100.00

주 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vam.koreainvestment.com)
회사연혁	2006. 02: 밸류운용(주) 설립 2006. 04: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006. 12: 한국밸류 10 년투자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 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 2006. 12: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 2008. 0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 04: 국내 최초 고객초청 운용보고대회 개최 2009. 07: 투자일임업 실시 2010. 02: '생활속의 펀드이야기' 펀드 역사 전시회 개최 2010. 02: 투자자문업 실시 2012. 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증권)
자본금	131.3 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증권(100%)

나. 주요 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계정과목	'25.01.01 ~'25.12.31	'24.01.01 ~'24.12.31
현금및예치금	133,623	76,629	영업수익	248,912	124,85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38,676	575,501	영업비용	31,113	36,240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18	682	영업이익	217,800	88,610
지분법투자자산	319,046	304,936	영업외수익	96,927	14,925
종속기업투자주식	345,162	202,664	영업외비용	6,044	27,026
대출채권및수취채권	640	3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8,683	76,510
유형자산	2,524	3,460	법인세비용	103,969	18,572
무형자산	1,597	1,051	당기순이익	204,714	57,938
기타자산	4,582	9,257			
자 산 총 계	1,346,368	1,174,500			
퇴직급여부채	658	288			
충당부채	184	176			
이연법인세부채	664,283	598,925			
기타부채	36,063	34,673			
부 채 총 계	701,188	634,061			
자본금	13,130	13,130			
자본잉여금	6,565	6,5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6)			
이익잉여금	625,484	521,360			
자 본 총 계	645,179	540,43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46,368	1,174,50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4.20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수탁고	11,644	421	7,554	4,643	0	0	8,955	0	33,21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회사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업무위탁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의안분석 서비스	전산업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대표전화 : 02-3775-333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대표전화 : 1877-7000)
회사연혁	2002년 6월 설립	1997년 9월 설립
홈페이지	http://www.cgs.or.kr	www.skbroadband.com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KEB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588-1111)
홈페이지	http://www.kebhana.com

가.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1) 의무
 - (가)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KB 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1588-9999)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는 신한아이타스, 2022년 9월 19일부터 KB 국민은행으로 변경

**2024년 6월 3일자로 KB 펀드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가. 주요업무: 기준가격 산정 및 통보

나.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02-2251-1300)	www.koreaap.com
KIS 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NICE 피앤아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주)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가. 주요 업무

(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나)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가)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나)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라)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i)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ii)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iii)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i)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ii)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iii)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iv)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i)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ii)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iii)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나)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3),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i)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ii)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ii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iv)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i) 재무상태표

(ii) 손익계산서

(iii)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ii)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iii)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i) 결산서류

(ii) 회계감사보고서

(iii) 수익자총회 의사록

- (라)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상기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마)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사)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행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공시방법]

- (가)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 2026.04.20.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22,483

주1)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위탁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호에 해당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1)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선정 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 채권부문 모두 3 개월에 1 회 실시합니다.
- (3)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 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 Tool 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